

의안 번호	600
----------	-----

## 울산광역시중구 지역건설 활성화 협의회구성 및 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# 1. 검토경과

- 제 출 일 자 : 2007. 11. 21(수)
-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위원회회부 : 2007. 11. 22(목)
- 위원회상정 : 2007. 12. 6(목)

### 2. 제안이유

지역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경쟁력이 있는 지역건설 육성·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 하고자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건설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·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### 3. 주요내용

-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위원회 기능 (안 2조)
  -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
  - 울산지역 민간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에 관한 사항
  - 관급공사 지역업체 의무공동 도급 비율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

○ **협의회 구성 및 임기 (안 3조 ~ 안 4조)**

- 위원장(부구청장), 부위원장(1명 : 호선)
- 울산광역시중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(3명)
-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(1명) 등
- 위원 임기 :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

○ **회의운영 (안 5조)**

- 정기회 : 지역건설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 지역건설 활성화추진 성과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심의 및 논의
- 임시회 : 각종 건설사업장에 지역건설 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심의 및 논의

**4. 근거법규**

- 지방자치법 제9조
-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, 제50조, 제49조

**5. 참고사항**

○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

◦ 광역자치단체(5개 단체)

- 부산 : 2004. 4. 12
- 인천 : 2004. 9. 24
- 충북 : 2006. 11. 17
- 대전 : 2006. 12. 29
- 광주 : 2007. 3. 31

◦ 기초자치단체(5개 단체)

- 울산 남 구 : 2007. 3. 20
- 충북 충주시 : 2007. 5. 31
- 충북 청주시 : 2007. 4. 27
- 충북 진천군 : 2007. 6. 21
- 충북 공주시 : 2007. 5. 15

○ 울산지역 전문건설업체 현황

- 중구 77    - 남구 283    - 동구 31    - 북구 32    - 울주군 245

## 6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건설활성화 협의회를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
-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
협회의 기능이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업체 지원 및 육성과 울산지역 민간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,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며, 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 등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
- 본 제정 조례가 지역건설 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건설관련 신기술 정보제공과 수주율 제고, 다양한 의견청취와 해결방안 제시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- 다만, 제2조 기능중 주상복합 건축물 및 공동주택 사업승인시 허가 또는 승인조건에 우리 구 건설업체 참여 부분에 있어, 일정규모 이상(공동주택 300세대 이상, 주상복합 21층 이상)은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, 승인조건에 넣도록 어떻게 권장할 것인지, 또한 제5조의 정기회, 임시회의 운영 시기가 명확하지 않는데 어떻게 운영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.